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 이유

-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평생교육법('08. 2. 29)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2009. 1. 1) 개정
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 평생교육의 영역 변경(안 제3조)
 - 평생교육의 영역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협의회 명칭 변경(안 제6조)
 - 구미시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추진협의회 →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
- 협의회 구성 변경(안 제8조)
 - 구성인원 : 15인 이내 → 12인 이내
 - 위 원 장 : 부시장 → 시장
-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 설치 신설(안 제12조)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운영 신설(안 제16조)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5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영역) 평생교육의 영역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구미시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추진협의회”를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제1항 중 “15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하고, “담당과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
2. 경상북도 구미교육청 교육장
3.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경상북도 교육위원
4. 구미시의회 의원
5. 구미시 평생교육 담당국장
6. 구미시 평생교육원장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 구미시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을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 설치) ① 주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 중 “평생교육원”을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시는 시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 학습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5조 ----- ----- ----- ----- ----- ----- ----- -----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반영
제3조(평생교육의 영역) 평생교육의 영역은 성인기 초교육 및 문해교육, 시민 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 예술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을 포함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영역) 평생교육의 영역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의 영역 변경
제2장 구미시 평생교육 인적 자원 개발추진협의회	제2장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	협의회 명칭변경
제6조(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추진협의회)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구미시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 명칭변경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구미시 교육담당국장, 구미시 평생교육원장, 구미교육청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부시장 2.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경상북도 교육위원	제8조(구성) ① ----- ----- ----- 12인 이내 ----- ----- ----- ----- ----- ----- ----- 교육장 ----- -----. 1. 시장 2. 경상북도 구미교육청 교육장	협의회 구성 인원 변경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3. <u>구미시의회 의원</u> 4. <u>구미시 평생교육 담당국장</u> 5. <u>구미시 평생교육원장</u> 6. <u>경상북도 구미교육청 평생교육 담당과장</u> 7. (생략)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제3장 구미시 평생교육원 설치·운영 제12조(평생교육원 설치) 주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미시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u><신 설></u> 제13조(위치) 평생교육원은 구미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14조(기능)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5. (생략) <u><신 설></u> 제16조(관계기관 협조) (생략) 제17조(수당등의 지급) (생략) 제18조(시행규칙) (생략)	3. <u>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경상북도 교육위원</u> 4. <u>구미시의회 의원</u> 5. <u>구미시 평생교육 담당국장</u> 6. <u>구미시 평생교육원장</u> 7. (현행과 같음) ②-----시장----- -----.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 설치·운영 제12조(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 설치) ① 주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위치)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 -----. 제14조(기능) 구미시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 평생학습관 등----- -----. 1.~5.(현행과 같음) 제16조(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시는 시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기관 협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8조(수당등의 지급)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9조(시행규칙) (현행 제18조와 같음)	위원장 변경 법 개정에 따른 개정 평생학습관 등 지원 근거 마련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근거 마련